

#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4. 1.

제출자 : 안산시장

주 문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와 관련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함.

주요골자 :

- 양상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및 건물취득 승인
- 시금고 건물취득(기부채납)에 대한 승인
- 시립어린이집 건물부지 매입및 건물취득 승인

○ 양상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및 건물취득 승인

## 가. 제안사유

- 75년도에 건립된 양상동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사용에 불편하고 붕괴위험이 있어 회관신축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 그동안 신축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회관건립에 어려움을 겪어오던중 주민합의로 부지매입 예정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양상동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함.

54

##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양상동 마을회관 건립
- 위치 : 양상동 229 - 2번지
- 부지 면적 : 843㎡ (255평)
- 건축 규모
  - 바닥 면적 : 44평 (145㎡)
  - 건축연면적 : 330㎡ (100평)이내
  -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 시설 :
    - 지하1층 (12평) : 보일러실등
    - 지상1층 (44평) : 노인방, 구판장등
    - 지상2층 (44평) : 회의실, 독서실등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어린이놀이터 시설 : 330㎡ (100평)

## 다. 예산규모

252,030천 원

- 부지 매입비 : 30,000천 원
- 건축비 : 215,000천 원
- 설계용역비 : 4,407천 원
- 감리용역비 : 2,623천 원

## 라. 주관실과 의견 (사회진흥과)

- 건강한 국토사업 (생활환경개선분야) 과 연계하여 양상동에 마을회관을 건립 하므로써 마을내 각종 행사와 주민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화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신축함이 타당함.

# ○ 시금고 건물취득 (기부채납)에 대한 승인

## 가. 제안사유

-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사무실 확대가 불가피하여 시금고를 지하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인(1일 약600-700명)의 지하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 취득(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장으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을 하였으므로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지출업무 대행등 그 용도에 맞도록 활용하고자 함.

## 나. 기부재산 신청내용

- 기 부 자 : 안산시 고잔동 527 - 5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장
- 위 치 : 안산시 고잔동 515 (민원실 옆)
- 건 축 면적 : 165.29m<sup>2</sup> (50평.)
- 규 모 : 1층건물 1동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재 산 가 액 : 165,290,000원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임)

## 다. 주관실과 의견 (회계과)

- 시금고 건물을 기부채납하여 그 용도에 맞도록 활용하므로써 이용주민 (1일 약600-700)의 지하이용으로 인한 불편야기를 해소하고
-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지출업무 대행등 관련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 시립어린이집 건물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승인

### 가. 제안사유

- 새마을유아원이 '93. 12. 31일로 폐쇄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며
- 공단배후 도시로서의 기혼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호하며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및 건물취득(부지1개소, 건물2개동)

- 월피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및 건물신축

- 위치 : 월피동 490 - 10, 490 - 11

- 대지면적 : 620.4m<sup>2</sup> (188평)

- 건축면적 : 660m<sup>2</sup> (200평)

- 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 소요예산 : 815,800천원

- └ 토지매입비 : 280,800천원

- └ 건물시설비 : 535,000천원

- 와동 어린이집 건물신축

- 위치 : 와동 96 - 1

- 대지면적 : 299.6m<sup>2</sup> (90평) — 시소유지

- 건축면적 : 438.8m<sup>2</sup> (133평)

- 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 건물시설비 : 332,500천원

## 다. 주관실과 의견 (가정복지과)

- '94. 12. 31일자로 새마을유아원이 폐쇄됨으로 인하여 영·유아들의 수용이 불가피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 기존여성근로자들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육시설에 수용코자 함.

## 라. 기타사항 (부지매입)

- 당초 부곡동 671 - 4번지 공공용지에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이 지역은 안산시 신도시 설계지침에 의거 "노숙자 시설" 건립은 불가지역이므로
- 부득이 인근의 월곡동 지역의 공공용지를 물색하였으나 타당 지역이 없어 개인 소유 토지를 취득하여 건립코자 함.

# 관 계 법령

## ○ 지방자치법

-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지방재정법

- 제75조 (기부채납)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
-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2조 (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자의 성명·주소 및 출연금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 제4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부락 공동시설(마을회관)의 경우는 건축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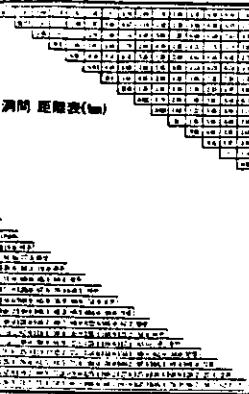
##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 (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2조 (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 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시계획 확·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 行政地圖



安

華

市

430

429

428

427

426

425

424

423

422

421

420

興

市

始

仙府洞

仙府洞

와동어린이집건립예정지

상동새마을회관건립예정지

월피동어린이집건립예정지

華

城

華

城

華

城

都

城

華